

의안번호	제 327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11월 22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연월일 : 2019. 11. 2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 대해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0년도 민간위탁 사업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명	사업대상	위탁기간	사업비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운영	학교폭력피해 학생, 학부모	2020.3.~12.	100,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2020.3.~12.	120,000
	2020. 초록학교만들기	충청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2020.2.~12.	200,000
	가정형Wee센터운영	청주 관내 위기학생	2020.1.~12.	246,306

3. 참고사항

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별첨

나. 관계법령: 별첨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2020년도 민간위탁 사업 목록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무명	사업대상	위탁기간	사업비
1	학교 자치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운영	학교폭력피해 학생 및 학부모	2020.3.~12.	100,000
2	학교 자치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2020.3.~12.	120,000
3	자연과학 교육원	2020.초록학교만들기	충청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2020.2.~12.	200,000
4	청주교육 지원청	가정형 Wee센터운영	청주관내 위기학생 (가정·학교폭력)	2020.1.~12.	246,306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운영

1.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 기관

나. 사업대상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

다. 위탁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20.3~2020.12.)

마. 위탁기관선정방법 : 위탁기관 공모

바. 사업비 : 100,000천원

사. 위탁주요사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치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동반 심리상담·치유
- 심리상담·치유를 통한 조속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

2. 참고사항

가. 202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운영 계획서: 별첨

나. 관계 법령: 별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9조

다.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19. 3.~12.
- 위탁업체 및 금액

한국피해자지원협의회(KOVA) 80,000천원

『202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운영 계획(안)

2019. 11.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학교 자치과]

『202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운영 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I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020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96, 2019.9.17.)

II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 전문기관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지원으로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

III 방침

- 사업의 효과성, 과정의 공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 기관(단체) 선정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위탁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회단체로 한다.
-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는 기관을 발굴·추천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한다.
- 전담지원기관-교육청-학교-가정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상담 실시 후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한다.
- 교육(지원)청 피해학생 위탁교육 선정 기관 대상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IV 세부 추진 계획

1. 운영 개요

가. 사업명: 『2020.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 운영

나. 사업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위기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심리치료, 치유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다. 위탁기간: 2020.03. ~ 2020.12.(10개월)

라. 추진방법: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제안·공모

마. 선정기관 수: 00기관

바. 응모 대상

-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상담사 (또는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 본 사업 목적에 합당한 실적이 있는 공공교육기관

사. 총 사업비: 100,000천원

아. 지원금 지원 방법 및 정산

1) 치유상담 운영 방법 및 지급 기준

- 기본 10회기 운영
- 학생: 1회기 당 50,000원
- 학생·부모 상담 시 1회기 당 70,000원

※ 심층심리상담평가가 요구될 시에는 Wee센터로 연계

2) 심리상담 및 치유비 지급 방법

- 분기별 지급 (상담치유기간이 짧은 경우 2개월 내외 신청 가능)

3) 피해학생 배정 및 심리상담치유비 정산 절차

- ① 단위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유상담 요청 → ② Wee센터에서 치유상담기관 연계 → ③ 심리상담 실시 → ④ 완료 후 정산 시 Wee 센터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⑤ Wee센터 도교육청으로 공문요청 → ⑥ 기관별 심리상담비 지급

2. 추진 일정

순	추진 단계	세부 내용	비고
1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확정	'19.11.
2	심사계획 수립	심사계획 확정	'19.12.
3	공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9.12.20.(금)
4	공모접수	신청서 접수	'19.12.23.(월)~12.31.(화)
5	서류심사(지원청)	서류 심사 (적정성 여부 판단)	'20.01.07.(화)
6	서류제출(지원청)	서류 제출 (기관에서 받은 서류 일체)	'20.01.10.(금)
7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20.01.15.(수)
8	최종선정 공고	서류심사 산출기준에 의한 점수	'20.01.17.(금)
9	업무계약	업무계약 체결 및 실무협의	'20.01.22.(수)
10	사업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차유지원	'20.03. ~ 21.02.
11	운영현황 점검	운영 현황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운영기간 중 1~2회

3. 공모 선정 절차 및 내용

가. 공모 기간: 2019.12.23.(월) ~ 12.31.(화)

나. 공모 안내: 본청 홈페이지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다. 기관별 제출 방법

- 1) 심리상담치유 기관이 설립된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2) 2020. 참여기관별 서류 작성 → 해당기관의 교육지원청 Wee센터로 제출 → 서류 심사(적정성 여부 판별) → 도교육청으로 제출
- 3) 최종 선정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별도 심의 후 선정·안내
- 4) 공모기관 서류제출 방법: 우편 및 인편제출
- 5) 교육지원청 제출 방법: 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후 우편 및 인편 제출
- 6) 서류 제출일: [2. 추진일정 참조]

라. 제출 서류 안내

순	제출 서류	부수	비 고
1	사업 계획서 (USB 1매 별도 제출)	각 6부	[서식 1]
2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서식 2]
3	공모 신청 기관 일반 현황 및 연혁 (기관 소개서)	1부	[서식 3]
4	사업 인력 보유현황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등 포함)	1부	[서식 4]
5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1부	[서식 5]
6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연관분야 사업 실적) ※ 사본 증명 포함	1부	[서식 6]
7	서약서	1부	[서식 7]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8]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10	비영리 민간인 단체 등록증(사본)	1부	민간단체일 경우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제출

나. 공모 사업 계획서(A4 규격) : 표지 양식은 [서식 1]에 의거 작성

- 총 6부 제출

- 이중 1부의 표지에만 (대표)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 나머지 5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미기재

다. 공모 신청서[서식 2]는 제안 단체(기관) 별로 1편을 제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라. 제안 단체(기관)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는 별도로 정한 번호로 별도 구분

마. 제안 단체(기관)는 제출서류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암호나 기호를 기재 불가 (위반시 평가 제외 가능)

- 바. 제출된 공모 신청서, 사업 계획서는 일체 미반환
- 사.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공모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 가능
- 아. 제안 단체(기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 단체(기관)가 책임자.
- 자. 공모 신청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차. 신청 현황과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카.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자·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단체 책임으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을시 충청북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키.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중복지정 불가

5. 사업계획서 평가

- 가. 평가위원: 별도 심사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
- 나. 평가 및 공모 사업자(기관) 선정 방법 [공모 신청 기관수에 따른 선정]
 - 1) 1 기관 신청 시: 적격심사

- *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공모 사업 추진 기관으로 내정
- *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실시

- 2) 2기관 이상 신청 시: 서류 평가에 의한 결정
- 3)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적합성, 교육여건,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 결정
- 4) 현장 실사 (필요 시)
 - 실사 내용 : 접근성, 시설 규모·수준 및 프로그램 진행 적정성, 기관장 의지, 프로그램 추가 운영 가능성 등
- 5) 수시 지정 가능
 - 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운영 희망 기관에서는 신청이 가능함

다.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자격요건 25점, 사업계획 55점, 사업성과 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점
			A	B	C	D	E	
자격요건 (25)	1. (지원대상) 위탁 사업자의 자격요건 2. -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이 있는 자 3. -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4. - 위탁 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 5. -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위탁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5	25	23	20	18	15	
사업계획 (55)	6. (시책연계성) 사업 목적과 신청계획의 연계성 7. - 신청사업계획이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 8. - 사업의 독창성, 기대효과 등이 뛰어난지 여부 9.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신청된 경우(지원탈락)	20	20	18	16	14	10	
	(사업계획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 - 추진일정 및 내용,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 사업추진의 주기적 관리 점검계획 수립여부	25	25	23	20	18	15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지표와 측정방법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20)	(기대효과) 중복교육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 수혜범위 등을 고려한 수혜도 10. - 사업전후 대비 중복교육 발전 기여도 등 기대효과 11. ※ 최근 1년이상 공익(교육)활동이 없는 경우(지원탈락)	10	10	8	6	4	2	
	12. (사업실적)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3년) 13. - 사업추진실적 우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성과 실적이 있는 경우 14. - 사업추진실적 저조: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미추진한 경우(△5)	10	5	4	3	2	1	
합 계		100						

라. 선정 제외 대상

: 교육의 중립성 위반, 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재정지원 제외 기준>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 종교교육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교 시설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6. 기타 유의사항

- 가. 심사를 위한 추가서류 요청 시 응시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제출된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함
- 다. 제출된 신청 서류에 명시된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교육청에 사전보고 해야 하며,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업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1.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00 기관(미정)

■ 특별교육 이수기관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비영리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상담 관련 기관 중 전문상담사 및 청소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가능한 기관

■ 심리치료 이수기관

충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고 전문상담사 및 정신건강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 또는 의원

나. 사업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다. 위탁범위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20. 3월~2020. 12월)

마. 위탁사업자선정방법 : 위탁기관 공모

바. 사업비 : 120,000천원

사. 위탁주요사무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자존감 회복,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상담치료 (병원)
- 심리상담·치유를 통한 조속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

2. 참고사항

가. 붙임: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 선정 공모 계획(안)

나. 관계 법령

-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9조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 선정 공모 계획(안)

2019. 11.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학교자치과]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 선정 공모 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I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II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

III 방침

- 학교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징계 받은 학생을 위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 특별교육기관 지정은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적합 판정 기관 선정
-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이수기관에 대한 점검·컨설팅·안전관리 실시
-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적극 홍보 및 안내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학교, 가정,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의 연계지도 강화
- 2019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실적 및 현황 반영 선정
-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

IV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0.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 지정·운영』

나. 사업내용: 학칙위반,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등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하고자 함

다. 운영기간: 2020.03. ~ 2020.12.(10개월)

라. 추진방법: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제안·공모

마. 선정 기관 수: 00기관

※ 공모 신청 기관수에 따라 지정 대상기관 수는 변경 가능

바. 응모 대상: 공모에 의한 적부 심사

■ 특별교육 이수기관

- 충청북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시설),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상담관련기관 중 전문상담사나 청소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가능한 기관
- 교육 수요에 따라 월 1~2회 이상 교육이 가능한 기관

■ 심리치료 이수기관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전문상담사 및 정신건강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 또는 의원

※ 전문상담사 자격요건

- 상담관련학 전공자
- 전문상담교사 자격,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1~3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소지하고 상담 및 청소년 교육관련 경력자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별교육이수기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중복지정 불가

2. 추진 일정

순	추진 단계	세부 내용	비고
1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확정	'19.11.
2	심사계획 수립	심사계획 확정	'19.12.
3	공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9.12.20.(금)
4	공모접수	신청서 접수	'19.12.23.(월)~12.31.(화)
5	서류심사(지원청)	서류 심사	'20.01.07.(화)
6	서류제출(지원청)	서류 제출	'20.01.10.(금)
7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20.01.15.(수)
8	최종선정 공고	서류심사 산출기준에 의한 점수	'20.01.17.(금)
9	업무계약	업무계약 체결 및 실무협의	'20.01.22.(수)
10	사업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리치료 운영	'20.03. ~ 21.02.
11	운영현황 점검	운영 현황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운영기간 중 1~2회

3. 신청 접수 방법

가. 공모기간: 2019.12.23.(월) ~ 12.31(화)

나. 공모안내: 본청 홈페이지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다. 기관별 제출 방법

1) 응모 기관: 기관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Wee센터로 서류 제출

2) 제출 절차

2020. 가해학생 참여기관별 서류 작성 → 해당지역의 교육지원청 Wee센터로
서류 제출 → 서류 심사(적정성 여부 판별) →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및 관
련 서류 우편인편 제출

3) 최종 선정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별도 심의 후 선정안내

4) 공모기관 서류제출 방법: 우편 접수 및 인편 제출

5) 교육지원청 제출방법: 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후 우편 및 인편 제출

6) 서류 제출일: [2. 추진일정 참조]

다. 제출서류

순	제출 서류	부수	비고
1	2020학년도 특별교육(심리치료)이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2	2020학년도 특별교육(심리치료)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6부	[서식 2]
3	2020학년도 특별교육(심리치료)이수기관 교(강)사 현황	1부	[서식 3]
4	서약서	1부	[서식 4]
5	공모 신청 기관 일반 현황 및 연혁 (기관 소개서)	1부	[서식 5]
6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연관분야 사업 실적) ※ 사본 증명 포함	1부	[서식 6]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7]
8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9	교(강)사·상담(치료)관련 소지자격증 사본 (스캔하여 파일첨부)	1부	
10	관련 강사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1부	
11	기타 증빙자료		

4. 사업계획서 평가

가. 평가위원 구성: 내·외부 위원 별도 위촉 후 추진

나.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적합성, 교육여건,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 결정

다. 현장 실사(필요 시)

- 실사 내용 : 접근성, 시설 규모·수준 및 프로그램 진행 적정성, 기관장 의지, 프로그램 추가 운영 가능성 등

라. 수시 지정 가능

- 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운영 희망 기관에서는 신청이 가능함
- 수시 지정 시 위의 '나~마'의 절차에 따라 진행

마.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자격요건 25점, 사업계획 55점, 사업성과 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점
			A	B	C	D	E	
자격요건 (25)	15. (지원대상) 위탁 사업자의 자격요건 16. -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이 있는 자 17. -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18. - 위탁 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 19. -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위탁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25	25	23	20	18	15	
사업계획 (55)	20. (시책연계성) 사업 목적과 신청계획의 연계성 21. - 신청사업계획이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 22. - 사업의 독창성, 기대효과 등이 뛰어난지 여부 23.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신청된 경우(지원탈락)	20	20	18	16	14	10	
	(사업계획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 - 추진일정 및 내용,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 사업추진의 주기적 관리 점검계획 수립여부	25	25	23	20	18	15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지표와 측정방법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20)	(기대효과) 중복교육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 수혜범위 등을 고려한 수혜도 24. - 사업전후 대비 중복교육 발전 기여도 등 기대효과 25. ※ 최근 1년이상 공익(교육)활동이 없는 경우(지원탈락)	10	10	8	6	4	2	
	26. (사업실적)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27. - 사업추진실적 우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성과 실적이 있는 경우 28. - 사업추진실적 저조: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미추진한 경우(△5)	10	5	4	3	2	1	
합 계		100						

바.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 043-290-2773)

5.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정산 절차

가.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준

- 1)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4회 지급 (분기별 지급, 필요시 변경 가능)
- 2) 학생 특별교육이수 1인당 6시간(1일) 기준 35,000원
 - 교육비(시간당 4,000원) + 식비(7,000원) + 간식비(2,000원) + 재료비(2,000원)
 - 3시간 이하 특별교육은 식비 제공하지 않음
- ※ 국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 교육비+ 간식비만 지급(변경)
- 3) 학부모특별교육비는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되 식비·간식비·교재비는 별도지급하지 않음
- 4) 심리치료 이수기관 : 심리치료 실적에 따라 회기당 50,000원, 분기별 지급
- 5) 지원금 사용범위 :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6)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7) 지원금 신청(분기별 1회, 특별교육 이수 종료에 따라 별도 신청 가능)

나. 정산 절차

- ① 단위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요청 → ② Wee센터 기관 연계 → ③ 심리상담 실시 → ④ 완료 후 정산 요구 시 Wee센터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⑤ Wee센터 도교육청으로 공문요청 → ⑥ 기관별 특별교육(심리치료)비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가.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 응모 계획서(A4 규격) : 표지 양식은 [서식 2]에 의거 작성

- 총 6부 제출
- 이중 1부의 표지에만 (대표)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 나머지 5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미기재

다. 제출된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함

라. 제출된 신청 서류에 명시된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교육청에 사전보고 해야 하며,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업선

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마. 직원 중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공모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 가능
- 사. 공모 신청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아. 신청 현황과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자.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단체 책임으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을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차.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할 수 없음

V 기대 효과

- 학생 비행 예방 및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도모
- 체계적인 적응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확보로 적기에 특별교육 실시
- 선도 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관계 법령 발췌

☐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2020. 초록학교만들기

1.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2020. 초록학교만들기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 15660호) 제4조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576호) 제3조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 위기 심화에 따른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교육 필요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초록학교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찾아가는 초록학교 설명회
- 초록학교 협약식
- 초록학교 담당교사 연수 및 워크숍
- 초록학교 지역협의회 운영
- 초록학교 공동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초록학교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록학교 한마당 운영
- 초록학교 성과보고회
- 초록학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기타

라. 민간위탁기간: 2020. 2. ~ 2020. 12. (11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추진 기관 공고 : 2019. 12. 17.(화) ~ 2020. 1. 17.(금)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2020. 1. 21.(화)
- 운영 관련 협상, 교부 검토 및 통지: 2020. 1. 22.(수) ~ 1. 31.(금)

바. 사 업 비 : 200,000천원

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계획(안)

- 심의일시: 2020. 1. 21. (화) 16:00~18:00
- 심의장소: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2층 이상설실
- 심의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9명)
- 안 건: 2020. 초록학교만들기 공모사업 제안 평가
- 심의결과: 평가 결과 적합 업체 및 기관 선정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고사항

가. 초록학교 만들기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별첨

나. 관계 법령: 별첨

다. 위탁현황

(단위: 천원)

년도	위탁기간	위탁업체	위탁금액
2017	2017.9.~12.	(사)풀꿈환경재단	56,000
2018	2018.3.~12.	(사)풀꿈환경재단	116,500
2019	2019.2.~12.	(사)풀꿈환경재단	163,300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2020. 초록학교만들기 민간 위탁 추진 계획

2019.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http://www.cbNSE.go.kr>

[전시체험부]

2020. 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2020. 초록학교만들기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운영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가.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의 위기 심화
- 나. 환경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대

2 추진 근거

- 가.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책무) (법률 제103173호, 2015. 2. 3.)
- 나.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조례 제3570호, 2013. 6. 28.)
- 다.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3576호, 2013. 9. 27.)

3 사업 목적

- 가.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을 실천
- 나. 교원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 학교환경교육 지원
- 다.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4 초록학교만들기 위탁개요

가. 사업명: 2020. 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 공모사업

나. 목적

-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실현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과 실천

다. 기간: 2020. 2. ~ 2020. 12. (11개월)

라. 추진방법: 충청북도교육청 위탁사업 제안 공개모집

마. 공모대상: 충청북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공익적 환경교육 또는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환경 단체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분야 비영리 법인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초록학교만들기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충청북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바. 추진주체: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사. 사업비: 200,000,000원 (이억원, 자체100%)

아. 위탁사무

- 초록학교추진협의회 및 초록학교지역협의회 운영
- 초록학교 담당교사 역량 강화 및 생태환경교육포럼 운영
- 초록학교 공동프로그램 및 학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초록학교 한마당 등 행사 진행 및 관련 자료 제작 배포

5 추진 체계 및 절차

①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2019.11.
②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	2019.11.
③위탁방법	• 위탁기관 선정 - 방법 : 공개모집(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자격 : 충청북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익적 환경교육 또는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	2019.12.
④위탁심사	•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9명(당연직 및 위촉직) - 심사 : 전문성, 사업계획 등 - 결정 : 공개모집 (고득점자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2020. 1.
⑤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2020. 1.
⑥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020.2.1.

6 세부 추진 계획

가.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조건
 - 사업의 범위는 「2020. 초록학교만들기」 사업 운영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위탁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

나.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 개최시기 : 2020. 1. 21. (화) 14:00 (예정)
 - 구성인원 : 9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 ※ 당연직: 전시체험부장, 총무부장,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3인)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 고득점 기관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2020년 1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7 향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도의회) : 2019. 11.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19. 12. ~ 2020. 1.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0. 1.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
- 위탁사무 개시 : 2020. 2. 1.(예정)

관계 법령 발췌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60호, 2018.6.12, 일부개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9.27.] [충청북도조례 제3576호, 2013.9.27., 제정]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4.1.] [충청북도조례 제3895호, 2016.4.1., 일부개정]

제2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③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도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형 Wee센터운영

1.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청주교육지원청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 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9항

○ 추진 필요성

-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주거), 교육,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생활 공동체 현대의 통학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 및 운영 가능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여학생을 위한 기숙형 성장·치유 프로그램 운영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운영,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형 위(Wee)센터 고유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23, 청주교육지원청 가정형 위(Wee)센터
- 직원현황: 총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생활지도사 2명)
- 시설 면적: 150m²

○ 위치(지도)



마. 민간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2020년도 위탁운영비: 246,306,000원

○ 산출내역

(단위:원)

관		항	과목	2020년 예산액	산출근거
인 건 비	인 건 비	급여	140,760,000	센터장 3,486,000원×12월=41,832,000원	
				팀장 2,427,000원×12월=29,124,000원	
				팀원 2,225,000원×12월=26,700,000원	
				생활지도원 1,796,000원×12월×2명=43,104,000원	
		명절수당	5,000,000	500,000원×5명×2회=5,000,000원	
		퇴직연금	12,396,670	총급여(급여+명절수당+복리후생비) 총급여148,760,000원÷12=12,396,670원	
		사회보험 부담금	14,360,470	국민연금 148,760,000원×4.5% = 6,694,200원	
				국민건강 148,760,000원×3.335%=4,961,150원	
				장기요양 4,961,146원×6.55%=324,960원	
				산재보험 148,760,000원×0.7%=1,041,320원	
고용보험 148,760,000원×0.9%=1,338,840원					
직책수당	1,200,000	100,000원×2명×6회=1,200,000원			
복리후생비	3,000,000	50,000원×5명×12회=3,000,000원			
수당	4,208,640	당직수당 100,000원×20회=2,000,000원			
		연차수당 2,208,640원(4명분) - 팀장 11,610×8시간×7일=650,160원			

과목		2020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 팀원 10,650×8시간×7일=596,400원 - 생활지도원 8,590원×8시간×7일×2명=962,080원		
	합계	180,925,780			
시설 운영비	관리 운영비	직원연수 및 회의비	400,000		
		출장비 및 여비	4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4,598,020	사무용품 1,154,020원	
				보험 680,000원	
				우편 및 수수료 240,000원	
				소모품비 2,200,000원	
				정수기렌탈료 27,000원×12개월=324,000원	
		협력기관 회비 및 업무추진비	400,000	전국가정형위센터회비 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원	
		운영위원회	720,000	운영위원회수당 20,000×8명×3회=480,000원 협의회의비10,000원×8명×3회=240,000원	
		제세 및 공공요금	7,310,000	전기요금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상하수도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전화 및 인터넷 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일반관리비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지방세 등 110,000원					
시설유지비	7,500,000	화단관리 1,000,000원			
		보안경비 1,300,000원			
		홈페이지관리 1,000,000원			
		전기안전점검 1,000,000원			
		소독 1,200,000원			
시설보수비 2,000,000원					
비품비	500,000				
홍보비	200,000				
예비비	300,000				
	합계	22,328,020			
사업비	사업비	의료 건강지원프로그램	2,400,000	체력증진 (요가, 생활체육 등) 100,000원×8명×2회=1,600,000원	
				질병관리(병원 및 의약품, 심리검사 등) 100,000원×8명=800,000원	
		생활지원사업	24,302,200	생활지원비(교통지원, 물품지원 등) 30,000원×8명×6개월=1,440,000원	
				급량비 3,100원×8명×2식×365일=18,104,000원	
				간식비 1,100원×8명×365일=3,212,000원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2,200,000	유급자원봉사자 8,590원×3시간×20일×3개월=1,546,200원	
				치유사업 100,000원×6회=600,000원 집단상담 100,000원×6회=600,000원	
흠커밍	1,300,000	개인상담 50,000원×20회기=1,000,000원			
		사제동행 50,000원×20회=1,000,000원 가족프로그램 300,000원×1회=300,000원			

과목		2020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교육진로 프로그램	3,200,000	학습 및 진로지원(교육비) 40,000원×8명×10개월=3,200,000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3,360,000	체험활동비 70,000원×8명×6회=3,360,000원
	캠프	5,040,000	캠프비용 2,520,000원×2회=5,040,000원 [캠프 1회 비용 산출내역] - 숙박비 700,000원 - 교통비(기차, 고속버스) 40,000원×8명×2회=640,000원 - 교통비(버스, 택시) 10,000원×8명×4회=320,000원 - 활동비(입장료, 체험등)540,000원 - 식비10,000원×8명×4회=320,000원
	자치운영 프로그램	500,000	자치프로그램 50,000원×10회=500,000원
	결연 프로그램	750,000	결연멘토 50,000원(1회)×3명×5회
	합계	43,052,200	
세출계		246,306,000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안건: 종합성과평가, 재계약 여부
-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 94점(재계약 심의 가능)
- 재계약 여부 심의 결과: 재계약 결정(위원 7인 중 6인 참석자 전원찬성)

2. 참고사항

가. 청주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추진계획: 별첨

나. 위탁현황

- 업체 및 기간: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2017.12.~2020.12.)
- 금 액: 2017년 62,937천원 / 2018년 219,184천원 / 2019년 239,132천원

청주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추진 계획

1. 운영 배경

가. 이혼가정 증가, 부모의 방임 등 가정환경으로 인한 위기학생 보호 목적의 중·장기 위(Wee)센터에 대한 필요성 제고

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주거), 교육,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생활 공동체 형태의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의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 방침

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이 결합된 공간을 장단기로 제공

나. 일반 교과 및 상담·진로·대안교육 실시를 통한 학습권 보장

다. 개별적 심리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3. 운영 개요

가. 대상: 청주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1	가정폭력피해 학생	-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한 중·고등학생
2	가정 위기 부적응 학생	- 가정위기로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
3	학교폭력 (성폭력)피해 학생	- 학교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한 중·고등학생
4	기타	- 기타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

나. 정원: 8명

다. 위탁 제외 고려 대상

- 1) 학업중단 청소년
- 2) 전염성질환, 정신증(psychosis) 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3) 같은 사건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게 될 경우
- 4) 기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가정형 위(Wee)센터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라. 학생 입소기간

- 1) 최소 6개월
- 2) 심의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와 연장 상담 치유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때는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장

4. 민간위탁 추진 기본 방향

가.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이전 수탁자를 결정하여 2년 계약)

나. 재위탁 추진사유

- 2018.10.30.(화)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청주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재수탁 신청

⇒ **청주교육지원청과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업무 협약서 제3조 2항**

“ 유스투게더 위탁기관 만료 후 재수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이전에 청주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하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재수탁 신청이 있을 경우는 운영실적, 성실도를 평가하여 위탁여부 및 기간을 결정 한다”

다. 민간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연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재위탁 유무결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위탁기관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7. 12.>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